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되는 문제가 있어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서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 가능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6조제6항제9호에 따른 동·식물성 잔재물(커피찌꺼기, 동물성 잔재물만 해당한다)을 수집·운반하는 자

제10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의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보관·재활용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을 각각 “지정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이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사진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축매 또는”을 “폐축매,”로, “같다”를 “같다) 또는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폐축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을 “폐축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정보 수집장치와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저장장치 등 부대설비로 구성한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 시설은 규칙 별표 7에 따른 보관시

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로 한다.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기준, 설치위치, 수량 등 설치·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영상정보 수집·보관

가.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나.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매립 처분하는 과정을 1일 24시간 상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동하여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여야 한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수집된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저장하여야 한다.

라. 영상정보의 열람, 파기 등 수집·보관·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 제2호의 51-46-00란 다음에 51-4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47 조명폐기물

51-47-01 폐형광등

51-47-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별표 4 제3호의 “91-13-00 폐형광등”을 “91-13 조명폐기물”로 하고, 91-13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1-13-01 폐형광등

91-13-02 폐발광다이오드조명

별표 4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R-3, R-4)

별표 4의2 제2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R-3: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
별표 4의2 제2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중 “직접 재생이용하는”
을 “제품을 제조하는”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7.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R-11)

R-11-1: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R-11-2: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
별표 4의3의 02-01-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0”을 “R-4-7, R-10”으
로 하고, 같은 표 02-01-0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0”을 “R-4-7, R-1
0”으로 하며, 같은 표 02-01-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0”을 “R-4-7,
R-10”으로 하고, 같은 표 02-01-05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0”을 “R-4
-7, R-10”으로 하며, 같은 표 02-01-99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0”을
“R-4-7, R-10”으로 하고, 같은 표 11-03-00의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
부란 51-17-04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0”을 “R-4-7, R-10”으로 하며,
같은 표 11-03-00의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란 51-18-01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1-1, R-2-1”로 한다.

별표 4의3 11-03-00의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란 11-03-00 51-18-0
2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1-1, R-2-1”로 하고, 같은 표 11-0
3-00의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란 51-18-03의 재활용 유형란 중 “R-
2-1”을 “R-1-1, R-2-1”로 하며, 같은 표 11-03-00의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란 51-18-99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1-1, R-2-1”

로 하고, 같은 표 11-03-00의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란 51-45-02의 재활용 유형란 “R-2-1”을 “R-1-1, R-2-1”로 하며, 같은 표 11-03-00의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란 제3호 91-09-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2-1”을 “R-1-1, R-2-1”로 하고, 같은 표 11-03-00의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란 제3호 91-17-00의 재활용 유형란 중 “R-10”을 “R-9-1, R-10”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잔재물(가연성은 제외한다)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산간·오지 또는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 제3호가목1) 및 2) 중 “사업장생활계”를 각각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하며, 같은 목 2)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하고, 같은 목에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에 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6호사목2)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하며, 같은 목에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불연성·비전도성 완충재로 개별 포장하거나 전용 운반 상자에 담아서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10)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절연처리를 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고상의 자원을 회수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별표 5의3 제2호나목2)나)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 2)다)(4)(나) 중 “화력발전소”를 “화력발전소 또는 열병합발전소”로 한다.

(3) 톱밥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폐목재·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만 사용해야 한다.

별표 6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사업장폐기물 중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로 배출된 5톤 이상의 폐기물(이하 “건설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별표 6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구체적”을 “장치의 규격 및 설치기준 등 구체적”으로 한다.

4.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아래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하여야 한다.

가. 운반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상차여부 및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할 때 하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정보, 운반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정보, 운반할 때 운반차량의 위성항법장

치(GPS) 등을 통해 확인한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라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하여야 하며 별표 7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건설폐기물중간처분업자를 포함한다)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과 진입로를 포함한 계량시설 인근의 영상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 운반자(차량소유자를 포함한다.)와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가목과 나목의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가)(1)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제8호다목, 라목 및 같은 비고 제10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각각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제31조의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로 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또는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로 한다).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 할 수 있다.

별표 8 제4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잔존용량, 잔존수명 등을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9) 중 “이상인 매립시설은 지진에 대한”를 “이상인 매립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진에 대한”으로 한다.

별표 16 제17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잔존용량 등을 측정한 후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8. 폐현수막을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단순 수리·수선, 세척을 통해 장바구니, 마대, 노끈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

별표 17의2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제66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 및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66조 제6항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제66조제6항제8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처리금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을 수 있다.

별표 21 제2호다목 위반행위 5)의 근거 법령의 1차란 “허가취소”를 “영

업정지 6개월”로 하고, 같은 목에 위반행위 5)의 법 제27조 제2항제1호의 2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허가취소

별표 21 제2호다목에 6)다)(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기물이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	-------------	-------------	------

별표 21 제2호다목6)다)(2) 중 “경미한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목에 6)라)(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	-------------	-------------	------

별표 21 제2호다목(2)을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6)라)(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	--

별표 21 제2호다목에 (가) 폐기물이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폐기물이 토양 또는 공공수역으로 유출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	-------------	-------------	------

별표 21 제2호다목에 (나)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

별, 가연성·불연성을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 가연성·불연성을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	-------------	-------------	------

별표 21 제2호다목에 (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	-------------	-------------	------

별표 21 제2호다목에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	-------------	-------------	------

별표 21 제2호다목에 (마)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	-------------	-------------	------

별표 21 제2호다목에 (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 고 운반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1개월	3개월	6개월	

별표 21 제2호다목에 (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1개월	3개월	6개월	

별표 21 제2호다목에 (아)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독하지 않은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 박·항공기에서 발생하 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독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1개월	3개월	6개월	

별표 21 제2호다목에 (자)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별표 21 제2호다목바)를 사)로 하고, 같은 목에 6)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 의 준수사항 중 대기오 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경고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영업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	--	--	--

별표 21 제2호다목 위반행위 14) 중 “영업정지”를 “경고”로 하고, 같은 목 14)의 근거 법령의 2차란부터 4차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	-------------

별표 21 제2호다목 위반행위 16)가) 중 “경우”를 “경우(단, 법 제13조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16)라)를 16)마)로 하고, 같은 목 16)다)를 16)라)로 하고, 같은 목 16)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정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 수집·보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	-------------	-------------	-------------	------

별표 21 제2호다목에 16)라)(2)를 16)라)(3)으로 하며, 제2호 같은 목 16)라)(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	----	-------------	-------------	-------------

지 못할 때 발급받은 폐
기물수집·운반증을 허
가기관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	--	--	--

별지 제5호서식 제2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쪽)

(4) 수탁 확인	㉕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수탁(예정)량 (톤/년)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종 류	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5) 적격 심사 확인	㉔ 공개경쟁 입찰 적격심사 결과			
	발주기관	적격심사 평가일자	평가방법	적격여부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역(지방)환경청장

수탁자 첨부서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제3쪽 제1호 중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5)”로 하고,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개경쟁입찰에서 적격심사(조달청의 폐기물 처리업체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되, 자체 적격심사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경우 자체 기준 적용도 허용)를 실시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쪽 제5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하고, 같은 제3쪽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6

12. 란의 발주기관은 입찰을 발주한 기관(위탁자), 평가일자는 적격심사 평가일을 적고, 평가방법은 적용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명칭을 적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쪽 중 “[1010]”을 “[1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1011)”으로 하고, 같은 제3쪽 중 “[2010]”을 “[2010], 재활용 환

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1011)”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제4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4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2호 중 “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제2호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일 부터,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1일 부터, 그 외의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며, 별표5 제1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의2 제7호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5호 서식 제3쪽의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

형(1011)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생략)	제9조(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운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제66조제6항제9호에 따른 동·식물성 잔재물(커피찌꺼기, 동물성잔재물만 해당한다)을 수집·운반하는 자			
4. (생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 ----- ----- ----- -----.			
1. ~ 10의2. (생략)	1. ~ 10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0의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11. (생 략)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u>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제외한다</u>)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u>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u>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	<u>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보관·재활용하는 경우</u> 11.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 ----- ----- ----- ----- ----- ----- ----- ----- ----- ----- ----- 1. ----- -----<u>별표 5</u>----- ----- ----- ----- ----- ----- -----<u>사업장비(非)배출시설</u> <u>계</u> ----- 2. ----- <u>지</u> <u>정폐기물</u> 3. -----
---	---

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을 포함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란 계량값을 말
한다.

③ (생 략)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
5조제9항제2호에서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1일 재
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 지정폐기물

②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사진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정보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나. (생략)
4. ~ 7. (생략)
② (생략)
<신설>

탄재는 제외한다)
나. (현행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법 제25
조제9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
리
가.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
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
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
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영상
정보 수집장치와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저장장치 등
부대설비로 구성한다.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 시설은 규칙 별표 7

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로 한다.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성능 기준, 설치위치, 수량 등 설치·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영상정보 수집·보관

가.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나.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매립 처분하는 과정을 1일 24시간 상시 영상정보처리기를 작동하여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하여야 한다.

다.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해 촬영·수집된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저장하여야 한다.

라. 영상정보의 열람, 파기 등 수집·보관·운영에 관한

	<u>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	------------------------------------